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231호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
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선불·직불지급수단에도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계· 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연계·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에 한정하여 선불·직불지급수단을 예금성 상품에 포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)
- 나. 연계·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에 한정하여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선불·직불전자지급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포함(안 제2조제3항 및 제5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금융소비자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

- 전자우편 : dufguf@korea.kr

- 팩스 : 02-2100-299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(전화 02-2100-2637, 팩스 02-2100-29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